

수질배출부과금 제도 개선(안)

'21. 12. 23.



환 경 부
수 질 관 리 과

목 차

I. 개요	1
II. 그간의 경과	2
III. 문제점	3
IV. 제도 개선(안)	4
V. 제도 개선(안) 전·후 비용 비교	7
VI. 향후일정	10

[붙임1]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비교

[붙임2] '20년 수질배출부과금 부과·징수현황

I. 개요

1. 배경

- 부과금 제도 도입(초과 '83년, 기본 '95년) 이후, 그간 **여건변화 미반영**
 - **수질오염물질** 항목수는 59종인 반면, **부과 대상은 19종**에 불과

[수질오염물질 지정 및 배출부과금 대상물질 연혁]

	'83년	'91년	'95년	'03년	'06년	'10년	'13년	'17년	'20년
수질 오염물질	21종	29종	29종	29종	40종	48종	53종	55종	59종
배출부과금 대상물질	12종	15종	17종	19종	19종	19종	19종	19종	19종

- **물질의 유해성,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등을 고려한 부과기준 개선 필요**

2. 현황

- **(부과금 종류)** 기본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
 - **(기본배출부과금)**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 저감을 위해 도입('95) 하였으며, 부과항목은 2종(유기물질, 부유물질)
 - **(초과배출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준수 유도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도입('83), 현재 부과항목은 19종(일반 8종, 특정 11종)
- **(산정방식)** 오염물질별로 부과하며 물질별 부과금 단가에 각종 부과 계수를 곱하여 부과금액을 산정

* **부과금액 = 배출량(kg) × 1kg당 부과금액(물질별 단가) × 부과 계수(사업장 규모별, 기준 초과율별, 지역별 등) + 정액부과금(초과부과금만 부과)**

II. 그간의 경과

□ 수질배출부과금 제도 도입('83)

-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유발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경제적 유인제도로 시행
- ※ 최초 도입 당시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만 부과(現. 초과배출부과금)

□ 기본배출부과금(유기물질, 부유물질) 제도 도입('95)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방류하더라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배출부과금을 부과
- ※ ex) COD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 20~40mg/L, 배출허용기준 : 40~130mg/L)

□ 배출부과금 부과항목 및 부과산정 방식 개선 추진

- 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추진('18년 과학원, '21.4~10 환경부)
- 이해관계자(전문가, 산업계 등) 의견수렴(총 5회)
 - (**'21.3, 전문가 회의**) ①부과항목 확대, ②단위중량당 부과액 현행화, ③대기배출부과금과의 형평성 고려
 - (**'21.7, 산·학·연 포럼**) ①물질의 유해성, 처리비용을 고려한 부과금 산정 ②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과계수 하향 조정
 - (**'21.7, 산업계 회의(2회)**) ①업계부담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부여 검토, ②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 요구
 - (**'21.12, 전문가 회의**) 부과금을 물질의 처리비용 보다 높게 산정하여 업계의 기준 준수 유도

III. 문제점

① 수질오염물질 대상 확대 등 여건 미반영

- 수질오염물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부과금 대상항목은 '03년 (19종)이후 변화 없이 운영 중

② 부과계수의 중복·과다 부과

- 폐수배출량*에 부과하는 동시에 사업장 규모별(1~5종, 1일 폐수배출량 기준)로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중복 부과

* 기준이내 배출량(기본)과 기준초과 배출량(초과)은 사업장의 일일유량을 반영하여 산정

- 초과율별 부과계수(3~7)가 대기배출부과금*에 비해 과도하게 산출

* 대기배출부과금의 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는 1.2~5.4

[현 부과금 산출 시 적용하는 부과계수]

구분	부과금액(원)	배출량(kg)	1kg당부과금액	부과금 산출 시 적용하는 부과 계수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21)	지역별 부과계수	초과율별 부과계수	사업장별 부과계수(1~5종)	유인환수별 부과계수	사업장별 부과정액(1~5종)
수질	기본	기준 이내 배출량	물질별 kg당 부과금액	x5.8282	x(1~1.5)	x(1~2.8)	x(1.1~1.8)		
	초과	기준 초과 배출량		x5.8282	x(1~2)	x(3~7)		x(1.1~1.8)	+(0.5~4백만)
대기	기본	기준 이내 배출량	물질별 kg당 부과금액	x1.7444	x(0.5~1.5)	x(0.2~1.0)			
	초과	기준 초과 배출량		x5.8282	x(1~2)	x(1.2~5.4)		x(1.05)	

③ 물질의 유해성,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등 반영 미흡

[배출부과금 지정연혁, 단위중량당 부과금액]

오염물질	지정연도	기준	부과금액	오염물질	지정연도	기준	부과금액
유기물질	1983	40~50	250	6가 크롬화합물	1983	0.5	300,000
부유물질	1983	60~80	25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983	0.1	300,000
크롬 및 그 화합물	1983	2	75,000	망간 및 그 화합물	1996	10	30,000
시안화합물	1983	1	150,000	아연 및 그 화합물	1996	5	30,000
구리 및 그 화합물	1983	3	50,000	페놀류	1991	3	150,000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983	0.1	500,000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991	0.003	1,250,000
수은 및 그 화합물	1983	0.005	1,250,000	트리클로로에틸렌	1991	0.3	300,000
유기인화합물	1983	1	150,000	총질소	2000	60	500
비스 및 그 화합물	1983	0.25	100,000	총인	2000	8	500
납 및 그 화합물	1983	0.5	150,000	-	-	-	-

IV. 제도 개선(안)

- ① 배출부과금 부과항목 확대(①기본 2종 → 4종, ②초과 19종 → 50종)
- ② 부과계수 개편(①중복계수는 삭제, ②과다계수는 하향 조정)
- ③ 단위중량당 부과금액 합리화(①유해성 반영, ②처리비용<부과금액)

① 부과항목 확대

- (기본부과금) 2종(유기물질, 부유물질) → 4종(유기물질,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 (초과부과금) 19종(특정 11, 특정 외 8종) → 50종*(특정 32종, 특정 외 18종)

* 수질오염물질 59항목 중 배출허용기준 미설정 항목(염소화합물, 황과 그 화합물, PFOS, PFOA, PFHxS),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수소이온농도, 생태독성, 총대장균군, 색도, 온도)은 제외

[배출부과금 시설별 제도 개선안 비교]

구분		내용	
폐수배출시설 (직접방류)	현행	무배출 → 방류수 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 → 초과부과금 기본부과금 ✓ 유기물질, 부유물질 2종 초과부과금 ✓ 폐놀류 등 19종	
	개편(안)	무배출 → 방류수 수질기준 → 배출허용기준 → 초과부과금 기본부과금 ✓ 유기물질(BOD, COD, TOC),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초과부과금 ✓ 폐수배출허용기준 50종 (수질오염물질 18종,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폐수배출시설 (간접방류)	현행	무배출 → 배출허용기준 → 초과부과금 초과부과금 ✓ 폐놀류 등 19종	
	개편(안)	무배출 → 배출허용기준 → 초과부과금 초과부과금 ✓ 폐수배출허용기준 50종 (수질오염물질 18종,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공공처리시설	현행	무배출 → 방류수 수질기준 →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 ✓ 유기물질, 부유물질	
	개편(안)	무배출 → 방류수 수질기준 →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 ✓ 유기물질, 부유물질, 총인, 총질소	

② 부과계수 개편

○ 기본부과금

- (폐수배출시설) ①사업장별 부과계수 폐지, ②초과율별 부과계수 폐지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초과율별 부과계수 조정

[기본부과금 산출계수]

구분	배출량(kg)× 부과단가	연도별 물가반영 ('21)	지역별 부과계수	초과율별 부과계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현행	배출량(kg)× 1kg당 부과금액	×5.8282	×(1~1.5)	×(1~2.8)	×(1.1~1.8)
개편(안)				×(1.1~2.1) *폐수배출시설 미적용	폐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100 까지
현행	1	1.2	1.4	1.6	1.8	2.0	2.2	2.4	2.6	2.8
개편 (안)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			
	1.1	1.3	1.5	1.7	1.9	2.1				

○ 초과부과금

- ①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조정, ②사업장 규모별 부과정액 폐지

[초과부과금 산출계수]

구분	배출량(kg)× 부과단가	연도별 물가반영 ('21)	지역별 부과계수	초과율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사업장별 부과정액
현행	배출량(kg)× 1kg당 부과금액	×5.8282	×(1~2)	×(3~7)	×(1.1~1.8)	+ (0.5~4백만)* * 1종 : 400만원 5종 : 50만원
개편(안)				×(1.2~4.5)		폐지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율 (%)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현행	3.0	4.0	4.5	5.0	5.5	6.0	6.5	7.0
개편(안)	1.2	1.5	2.0	2.5	3.0	3.5	4.0	4.5

③ 단위중량당 부과금액 합리화

○ **(기본항목)** 공공폐수처리시설(215개소)의 총 처리비용을 토대로 kg당 부과금 산정**

* 유기물질(BOD, TOC),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 kg당 부과금 = 처리비용(원) × 물질별 기여율 ÷ 오염물질 처리량(kg) ÷ 20(시설 내구연한)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구분	유기물질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
	BOD	TOC			
현행	250원	450원	250원	500원	500원
kg당 부과금 산정 결과	300원	540원	300원	800원	7,100원

※ TOC는 COD → TOC 전환비율 1.8배 적용

○ **(기본항목 외 수질오염물질)** 물질별 대표 처리기술(응집, 활성탄, 활성슬러지)에 따라 kg당 처리비용을 산정하고, 처리비용과 유해성을 고려하여 부과금 산정

물질명	前	後	물질명	前	後
	kg당 부과금(원)	kg당 부과금(원)		kg당 부과금(원)	kg당 부과금(원)
구리와 그 화합물	50,000	32,000	트리클로로에틸렌	300,000	315,000
납과 그 화합물	150,000	189,000	폴리염화비페닐	1,250,000	31,451,000
니켈과 그 화합물		32,000	벤젠		944,000
망간과 그 화합물	30,000	10,000	사염화탄소		2,359,000
바륨과 그 화합물		10,000	디클로로메탄		472,000
비소와 그 화합물	100,000	378,000	1,1-디클로로에틸렌		315,000
음이온계면활성제		19,000	1,2-디클로로에탄		315,000
셀레늄과 그 화합물		95,000	클로로포름		118,000
수은과 그 화합물	1,250,000	18,871,000	1,4-다이옥산		24,000
시안화합물	150,000	95,000	DEHP		472,000
아연과 그 화합물	30,000	19,000	염화비닐		189,000
노말헥산추출물질(광유류)		19,000	아크릴로니트릴		472,000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류)		4,000	브로모포름		315,000
주석과 그 화합물		19,000	퍼클로레이트		315,000
철과 그 화합물		10,000	아크릴아미드		2,359,000
카드뮴과 그 화합물	500,000	944,000	나프탈렌		189,000
크롬과 그 화합물	75,000	48,000	폼알데하이드		19,000
불소 화합물		7,000	에피클로로히드린		315,000
페놀류	150,000	32,000	톨루엔		14,000
페놀		95,000	자일렌		19,000
펜타클로로페놀		9,436,000	스티렌		472,000
유기인화합물	150,000	95,000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48,000
6가크롬화합물	300,000	189,000	안티몬		472,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00,000	944,000			

V. 제도 개선(안) 전 · 후 비교

1. 시설별 부과예시

① 폐수배출시설

◇ [가정] 배출량 : 2,000m³/d, 지역 : 가, 조업일수 : 264일, 모든 수질오염물질 배출
 ※ 단, 초과배출부과금은 3일 초과

<평가조건>

○ 기본부과금

구분	前	後
1kg당 부과금액	- 유기물질(BOD) : 250원 - 부유물질 : 250원	- 유기물질(BOD) : 300원 - 부유물질 : 300원 - 총질소 : 800원 - 총인 : 7,100원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8282('21년 기준)	
사업장별 부과계수	- 1.4(2,000m ³ /d 기준)	- 폐지
지역별 부과계수	- 1.5(가지역 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10% 초과 : 1.2 - 60% 초과 : 2.2 - 30% 초과 : 1.6 - 90% 초과 : 2.8	- 폐지

○ 초과부과금

구분	前	後
1kg당 부과금액	- 구리와 그 화합물 : 50,000원 - 납과 그 화합물 : 150,000원 - 망간과 그 화합물 : 30,000원 · · · 19항목	- 구리와 그 화합물 : 32,000원 - 납과 그 화합물 : 189,000원 - 망간과 그 화합물 : 10,000원 · · · 50항목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8282('21년 기준)	
지역별 부과계수	- 2(가지역 기준)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60% 초과 : 4.5 - 250% 초과 : 6.0 - 150% 초과 : 5.5 - 400% 초과 : 7.0	- 60% 초과 : 2.0 - 250% 초과 : 3.5 - 150% 초과 : 3.0 - 400% 초과 : 4.5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1.5	
사업장 부과정액	- 400만원(1종 사업장 기준)	- 폐지

<분석결과>

○ 기본부과금

(단위 백만원)

구분	前				後			
	10% 초과	30% 초과	60% 초과	90% 초과	10% 초과	30% 초과	60% 초과	90% 초과
유기물·부유물(기준)	7	29	79	151	5	15	31	46
총질소·총인(신규)	-				8	24	48	72
계	7	29	80	151	13	39	79	118

○ 초과부과금

(단위 백만원)

구분	前				後			
	60% 초과	150% 초과	250% 초과	400% 초과	60% 초과	150% 초과	250% 초과	400% 초과
기존 19종	961	2,773	4,976	9,220	200	751	1,460	3,003
신규 31종	-				388	1,455	2,829	5,819
계(50종)	961	2,773	4,976	9,220	588	2,206	4,289	8,822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 [가정] 방류량 : 2,000m³/d, 지역 : 가, 운영일수 : 365일

<평가조건>

구분	前	後
1kg당 부과금액	- 유기물질(BOD) : 250원 - 부유물질 : 250원	- 유기물질(BOD) : 300원 - 부유물질 : 300원 - 총질소 : 800원 - 총인 : 7,100원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8282('21년 기준)	
사업장별 부과계수	- 1.4(2,000m ³ /d 기준)	- 폐지
지역별 부과계수	- 1.5(가지역 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10% 초과 : 1.2 - 60% 초과 : 2.2 - 30% 초과 : 1.6 - 90% 초과 : 2.8	- 10% 초과 : 1.1 - 60% 초과 : 1.7 - 30% 초과 : 1.3 - 90% 초과 : 1.9

<분석결과>

○ 기본부과금

(단위 백만원)

구분	前				後			
	10% 초과	30% 초과	60% 초과	90% 초과	10% 초과	30% 초과	60% 초과	90% 초과
유기물·부유물(기준)	5	21	59	113	4	15	39	65
총질소·총인(신규)	-				12	43	113	190
계	5	21	59	113	16	58	152	255

2. 실제 부과사례 적용('18년)

- ◇ (기본부과금) 폐수배출시설 263개소, 공공하폐수처리시설 48개소
- ◇ (초과부과금) 폐수배출시설 605개소(초과부과금 내역 및 지자체 단속결과 반영)

<평가조건>

○ 기본부과금

구분	前	後
대상	- 폐수배출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이용자료	- 유기물질, 부유물질 : '18년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내역서 - 총질소, 총인 : '18년도 기준 사업장별 배출자료(전국오염원 조사자료)	
1kg당 부과금액	- 유기물질(BOD) : 250원 - 부유물질 : 250원	- 유기물질(BOD) : 300원 - 부유물질 : 300원 - 총질소 : 800원 - 총인 : 7,100원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8282('21년 기준)	
사업장별 부과계수	- 규모에 따라 1.1 ~ 1.8	- 폐지
지역별 부과계수	- 지역에 따라 1.0 ~ 1.5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초과율에 따라 1.0 ~ 2.8	- 폐수배출시설 : 폐지 - 공공하·폐수처리시설 : 초과율에 따라 1.1 ~ 2.1

○ 초과부과금

구분	前	後
대상	- 폐수배출시설	
이용자료	- 기존 19종 : '18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내역서 - 신설 31종 : '18년도 지자체 지도단속 자료	
1kg당 부과금액	- 구리와 그 화합물 : 50,000원 - 납과 그 화합물 : 150,000원 - 망간과 그 화합물 : 30,000원 ⋮ 19항목	- 구리와 그 화합물 : 32,000원 - 납과 그 화합물 : 189,000원 - 망간과 그 화합물 : 10,000원 ⋮ 50항목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5.8282('21년 기준)	
지역별 부과계수	- 지역에 따라 1 ~ 2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초과율에 따라 3 ~ 7	- 초과율에 따라 1.2 ~ 4.5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에 따라 1.1 ~ 1.8	
사업장 부과정액	- 규모에 따라 50만원 ~ 400만원	- 폐지

<평가결과>

- (기본부과금) 기존 물질의 경우 1,582백만원 감소(2,770 → 1,188)하는 반면, 신규 물질(총인, 총질소) 반영(24,480백만원)시 22,898백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분	前(A)	後(B)	차액(B-A)
소계(기존)	2,770	1,188	- 1,582
유기물	2,232	881	-1,351
부유물	538	307	-231
소계(신규)	-	24,480	24,480
총인	-	10,762	10,762
총질소	-	13,718	13,718
계	2,770	25,668	22,898

※ 폐수배출시설 2,549백만원 → 12,680백만원, 공공하폐수시설 221백만원 → 12,988백만원

- (초과부과금) 기존 물질의 경우 775백만원 감소(3,995 → 3,220)하는 반면, 신규 물질(6,961백만원) 반영시 6,186백만원 증가*

* 특정 사업장(1종)에서 신규 부과물질인 '벤젠' 초과(240%초과, 40일간)로 5,227백만원 반영
(단위 백만원)

항목	前(A)	後(B)	차액(B-A)
소계(기존)	3,995	3,220	-775
유기물질(COD)	1,238	741	-497
유기물질(BOD)	150	123	-27
부유물질(SS)	1,099	722	-377
총질소	784	780	-4
총인	124	537	413
아연	103	32	-71
시안 화합물	220	75	-145
6가크롬 화합물	27	8	-1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6	3	-3
비소 및 그 화합물	78	164	86
납 및 그 화합물	1	0.005	-1
구리 및 그 화합물	147	31	-116
크롬 및 그 화합물	0.001	0.0003	0.002
망간 및 그 화합물	18	3	-15
소계(신규)	-	6,961	6,961
1,4-다이옥산		1,008	1,008
불소 및 그 화합물		44	44
음이온계면활성제		65	65
철 및 그 화합물		438	438
벤젠		5,227	5,227
광유류		79	79
동·식물유지류		0.54	0.54
1,1-디클로로에틸렌		0.02	0.02
디클로로메탄		100	100
계	3,995	10,181	6,186

VI. 향후일정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22.上)

구 분		초과배출부과금('83~)	기본배출부과금('95~)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허용기준 준수 유도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 저감·관리
대상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종(일반 8종, 특정 11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종(유기물질, 부유물질)
부과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종 사업장(공동방지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종 사업장(공동방지시설)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감면·면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과율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사업장 종별 부과금 미부과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진신고시 - 경미한 초과+개선명령 미처분 +TMS설치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류수 수질기준 미초과 기간(6개월~3년)에 따라 20~50% 감면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20~90% 감면 5종 및 공공 하·폐수시설 유입시 면제 가능
부과기준	폐수배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방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배출허용기준 이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부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시료채취일)부터 개선완료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 반기별 (상반기 6.30, 하반기 12.31)
부과·징수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역(지방)청장(통합허가사업장) 지자체의 장(일반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역(지방)청장(공공 하·폐수시설) 지자체의 장(사업장)
부과금 산정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기관 점검결과 사업자의 자진 개선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제출자료와 관리기관 수질검사자료 기초로 산정
산정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kg) × ②오염물질 단위중량당 부과금액 × ③연도별 산정지수 × ④지역별 부과계수 × ⑤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⑥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⑦사업장 종별 정액부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배출허용기준이내 오염물질 배출량(kg) × ②오염물질 단위중량당 부과금액 × ③연도별 산정지수 × ④사업장 종별 부과계수 × ⑤지역별 부과계수 × ⑥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징수교부금 지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징수율 60% 미만) 10%, (60~80%) 15%, (80% 이상) 20% 	

(단위: 천원)

지역명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합 계	106,430,797	11,259,941	37,665,344	57,505,511	10.6%
서울특별시	16,904,742	3,095,473	10,507,653	3,301,615	18.3%
부산광역시	48,042,106	1,126,249	0	46,915,856	2.3%
대구광역시	495,768	196,770	912	298,085	39.7%
인천광역시	579,381	288,773	0	290,608	49.8%
광주광역시	19,667	19,667	0	0	100.0%
대전광역시	16,409	16,409	0	0	100.0%
울산광역시	30,911,862	598,389	26,628,587	3,684,885	1.9%
세종특별자치시	11,672	5,152	0	6,519	44.1%
경기도	5,404,533	3,201,940	517,681	1,684,910	59.2%
강원도	134,619	91,706	0	42,913	68.1%
충청북도	928,973	773,480	0	155,493	83.3%
충청남도	601,761	262,411	10,509	328,841	43.6%
전라북도	628,856	257,660	0	371,195	41.0%
전라남도	437,448	286,100	0	151,347	65.4%
경상북도	294,933	222,756	0	72,177	75.5%
경상남도	622,726	508,101	0	114,624	81.6%
제주특별자치도	127,207	110,931	0	16,275	87.2%
한강유역환경청	122,362	59,860	0	62,501	48.9%
낙동강유역환경청	42	42	0	0	100.0%
금강유역환경청	30,971	23,498	0	7,473	75.9%
영산강유역환경청	198	198	0	0	100.0%
원주지방환경청	19,008	19,008	0	0	100.0%
대구지방환경청	17,853	17,708	0	145	99.2%
전북지방환경청	13,873	13,873	0	0	100.0%
수도권대기환경청	1,539	1,500	0	39	97.4%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56,153	56,153	0	0	100.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623	5,623	0	0	100.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500	500	0	0	100.0%